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보다 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9. 5. 29.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자동차 운영보험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대섭, 사무관 유찬호, 주무관 박정길 • ☎ (044) 201-3856, 3857	
보 도 일 시		2019년 5월 3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29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...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...성능점검 관련 손해, 보험사에서 보상

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량을 구매한 A씨는 구매 10일 후 정비이력 확인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의 앞쪽 문이 전체 교환된 것을 알았다.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도 문 교환여부가 표시되지 않아, 매매상사로부터 앞문 교환 차량이라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다. 매매상사는 A씨에게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 차량이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, A씨는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중고차 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'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,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하여, 이번 6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.
- 중고차 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·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.
-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·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

발생한 경우,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.

- 이번 성능·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, 소비자는 허위 성능·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
-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,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.

-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·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.

-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‘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’이라고 하면서,

- ‘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’ 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행보험과 유찬호 사무관(☎ 044-201-38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